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26 선고 2017가단10998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론 종결2019. 6. 12.

판결 선고2019. 6. 2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별지 상속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. 4. 25.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가. 피고 F, G, H, I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나. 피고 B, C, D, E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한경환

별지